

제43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6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11.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1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7)
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5)
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8)
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6)

2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3)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4)

상정된 안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 3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3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3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3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3
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3
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3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3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3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3
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3
1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4
1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7) 4
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5) 4
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4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4
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8) 4
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4
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4
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4
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6) 4
2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3) 4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4) 4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강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강명구입니다.

오늘 후반기 첫 법안소위에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안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안전과 치안·소방 시스템을 다루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전문성 있는 고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만을 최우선으로 삼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회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산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법안의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후반기에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늘 두 시에 본회의도 있고 해서 오전에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인사말은 우리 다 서로 한번 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법안심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와 이태원특조위,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총 23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1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7)

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5)

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8)

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6)

2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3)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4)

(10시07분)

○소위원장 강명구 의사일정 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입니다.

평소에 저희 업무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법안 개정이라든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과목의 면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인재난관리사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및 재난관리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한 직무 역량을 검정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시험과목은 1차 시험으

로 재난관리총론, 위험평가, 예방·대비, 대응·복구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상 시험 면제 범위를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격시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은 24년 3월에 개정되었고 제1회 자격시험은 28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별로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자격별 구체적 검토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시험 면제 범위를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조문대비표 5페이지 봐 주십시오.

5페이지를 보시면 현행은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개정안은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인데 저희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별로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떻게 면제할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수정의견은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부칙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별 면제 과목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시험이 지금 몇 번째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7년도에 시범하고 28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험 제도를 시행, 제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부 면제 또 일부 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대학에 재난관리 관련 학과 같은 게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있습니다. 소방과 같이 소방방재학과로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대학원 같은 데는 재난관리 별도로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대개의 경우는 소방방재 이렇게 해서 소방과 같이 설치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거 시험 치려면 보통 교과서 같은 게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교과서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 모양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방재안전직이라고, 공무원 중에도 방재안전직에서 이런 유사한 과목들을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과목들에 대한 교과서라든지 내용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식 위원 공인재난관리사 이거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이런 자격증……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요.

○이상식 위원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공무원 들어올 때 혜택, 가점을 준다든지 또 들어왔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라든지 또 기존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재난 또 민방위 또 비상대비 이런 전반적으로 재난관리 쪽의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양 이런 것들을 하는 자격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시험과목 같은 거는 해당 부처에서 동의하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강명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정부안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요 내용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명칭 변경·사후관리 제도 및 벌칙 조항 신설입니다.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를 보시면 기업재난관리사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으로 법률에 따라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분야는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자격 취소,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면서 취소 처분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증과 자격의 정의에 따라 국가자격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자격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벌칙 상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인재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행위에 대한 벌칙을 3페이지 보시면 79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재난안전 분야 국가자격으로서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들은 이와 같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또한 또한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벌칙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기업재난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재난관리사의 분야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분야가 있습니다. 이 기업재난관리사를 인력으로 두는 사업자인 대행자의 등록 결격사유와 맞추어야 되는데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전혀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했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피성년후견인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 법에서는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인 대행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비례성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른다면 정부안은 기업재난관리사는 사업자인 대행자의 임원과 달리 임원은 징역형 이상의 경우 등록이 결격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만 선고받으면 액수에 관계없이—하한이 없습니다—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 자격자를—4페이지입니다—기술인력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 자격자와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재난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 대행자와 결격사유를 맞추어서 개정안과 달리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자를 결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4페이지입니다.

청문 실시 범위에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정지 처분도 포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격 취소뿐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 역시 중대한 권익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

들을 참고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 실시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한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 7페이지부터 보시면, 10조2의 2항입니다. 기업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는, 정부안과 달리 대행자와 맞추어서 결격사유를 하나로 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결격사유를 규정했습니다. 2항에서 조문을 정리했고.

8페이지 보시면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4항입니다. 4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추어서 법문을 명확히 했습니다. 빌려 주는 거는 자격증 있는 자지만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입법례에 따라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수정한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격사유를 개정함에 따라 결격사유가 하나가 됨에 따라 각호가 아니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페이지는 청문 대상의 자격취소만 있었으나 자격정지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12페이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른 입법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현 위원 의견은 없고요. 궁금한 게, 기업재난관리사하고 공인재난관리사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상하위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별도로, 재난관리사는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재난관리사는 기업 쪽에 한정돼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업의 재해경감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대행해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사라는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자격증은 동일한 자격증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릅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이고, 아까 1차 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1차 면제할 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목의 1차를 일부 면제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업재난관리사 고용의무가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재해경감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는 이런 자격증이 있는 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거기를 통해서 하도록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언뜻 들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그런 거 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령 대표이사가 자기가 중대재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사 같은 이런 사람도 고용하고 했다는 거를 설명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법적 권한을 전속적으로 주는 거라기보다는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기업재난관리사는 2010년부터 있었습니다. 관리자로 있었고 16년에 관리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재난관리사는 아직까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있어서 재해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입찰에서도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받게 되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잘 알겠어요.

원래는 공인 이런 게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된 측면이 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기업이 먼저 있고 이제 공인이 생깁니다.

○**박정현 위원** 공인은 올해부터?

○**전문위원 김세현** 28년도에 첫 시험을, 법은 24년도에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고 28년에 첫 시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나’, ‘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세현**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추가 부분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행자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법상 정의조항을 반영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서를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자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재난관리사도 개정안에서 동일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용어를 정비하면서 15조 1호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를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돼 있지 않아 이 조문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조문대비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기업이 나옵니다.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우수기업이 말씀드린 대로 이 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우수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조 1호의 준수사항 중에서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

제하지 아니할 것인데 정의 규정에도 활동계획으로 되어 있고 수립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어 정비입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고 이거는 시행 준비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증제도를 자격제도로 변경함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세 가지 경과 조치가 있는데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건 종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시험 실시 및 인증서 발급을 위탁받은 기관 등을 각각 개정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 교부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보는 경과조치이며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또한 다 인증을 자격제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승강기 안전관리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 세 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법들은 모두 그 법에 소관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중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제한과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76조의2를 한번 봐 주십시오.

1항 4호입니다. 4호를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이 보험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정안과 달리 개정안은 계약 체결 거부 제한만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에 따르면 가입 요청 거부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6호를 보시면—이건 3페이지입니다—6호는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조문대비표인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페이지 30조 3항은 말씀드린 대로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기준도 맞추고 참고 입법례 항공사업법에 항공보험 가입 의무 규정에서 최근에 이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25년 12월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승강기법을 제외한 두 법들에 있어서는 이번에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이 취지에 따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부칙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부칙을 보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례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거부 제한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도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에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또 항공사업법 부칙도 마찬가지로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번 계속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세현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지이고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또한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보시면 이 해당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를 했을 뿐 아니라 또 지금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재 관련 부분입니다. 보험·공제 미가입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좀 비교가 필요합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하고 있으나 유선·도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시면 일단 먼저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합니다. 사업의 면허 취소·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고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서 바로 형사벌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 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업자에게 오히려 제재 수준이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현행처럼 사업의 면허 취소·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현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계속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세현 2번이 아직 부칙을 말씀드려야 돼서, 지금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칙이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부칙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행일은 문제가 없으나 검토의견은 적용례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은 지금 개선명령은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무보험이라는 전제하에서 개선명령, 가입 명령은 하지 않지만 행정처분과 벌칙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개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만 개선명령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명령을 받은 유·도선 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도 같이 삭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 개선명령을 받은 유·도선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하도록 경과 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취지로 조문대비표 19쪽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전문위원 김세현 3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해서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24페이지 보시면 적용례도 필요해서 앞에서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례도 정리했습니다.

2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5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태원특조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박진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들어 오셨습니까? 간단히 인사해 주시겠어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는 점에 대해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요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범위에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정춘생 의원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중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직무로서 구조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받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긍정적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무로서 구조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서 정하는 지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정하지 않고 구조 수습 참수사에게 보상금 지급을 하는 규정에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서 지금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 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세현 6페이지입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각 개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활동기한을 말씀드리면 26년 9월 16일 자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7페이지입니다—정춘생 의원안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현행법상 1년을 2년으로 바꾸고 있고 단서는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활동기한 종료일을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로 명문화하고 있고 단서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

동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성격의 위원회 연장 사례와 조사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봐 주십시오.

활동기간 연장 시, 그렇다면 연장 방식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 단서에 따라 한 차례 활동기간이 이미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서규정을 존치시키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27년 6월 16일인지 9월 16일인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지가 1년 연장이라면 2027년 9월 16일로 활동기한을 명시하고 이 연장에 관한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이해식 의원안이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관련 입법례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상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또한 법개정을 통해서 2025년 6월 16일로 활동기한을 명시하고 연장에 관한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저희 위원회는 조사의 제대로 된 결말을 위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도 그렇고.

○박정현 위원 이해식 의원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해식 의원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소위원장 강명구 예, 이해식 의원안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번으로 갈까요?

○전문위원 김세현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현실화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정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절차를 근본은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인지 시책적 보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용혜인 의원안과 권칠승 의원안에는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배상 또는 보상 중 적절한 행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첨언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좀 반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라’로 넘어갈까요?

○전문위원 김세현 21페이지입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만 다만 개정안의 제안일자가 26년 2월 24일입니다. 이 당시에, 그 이후인 개정은 2월 10일, 개정안 제안일자보다 그 전에 개정이 됐지만 시행은 그 후인 5월 11일 날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서 이미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서 ‘활동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함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비교를 말씀드리면,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정안에 따르면 27년 5월 20일까지 치유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27년 9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개정안의 취지가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24페이지 ‘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일상생활돌봄 지원근거 신설입니다.

현행법은 생활지원금이 의료지원금, 심리상담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 규정에 교육비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여객기참사지원법 또한 교육비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 지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정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유아·유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보육·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상보육·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에만 지원이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돌봄 지원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6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육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영유아·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삭제가 필요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도 삭제가 필요하며 대학생 교육비 관련해서도 희생자에 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도 영유아라든지 초중등 학생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대학생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가 말하는 것처럼, 교육부의 의견처럼 희생자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좀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대학생 관련해서는 다른 입법례처럼 해 주는 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1년 더 연장 요청을 하는 건데 조사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내년에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 개시 결정이 자료 확보 이전에 되면서 저희가 핵심적인 과제들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부족할 따름이기 때문에 완료해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혹시 저……

○소위원장 강명구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 내 주셨는데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정안이 나온 건가요? 그것에 따라서 반영된 수정안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세현 가. 피해자의 범위에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수정안은 지금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걸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행은 공무원은 제외하고 정춘생 의원안은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과 관련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포함하실지 제외하실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김예지 위원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발의된 안은 공무원도 포함하자는 건데

저희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게 의견입니다.

○**김예지 위원** 저는 특조위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아까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저희는 사실 이걸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희생된 소방관들에 대해서 희생자로 인정하는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참사와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지만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그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아니,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희생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어떤 소방관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두 분에 대해서 조사개시를 했습니다.

○**박주민 위원** 두 분, 그 부분의 경우에는 특례 지원이나 이런 게, 공무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두 분이 있는데요. 제가 두 사건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한 분의 경우는 아마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의 인정 결정 이후에는 그 지원 여부는 별도로 또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순직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범위가 달라서……

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법에 따르면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적인 희생자라면 당연히 되는 거고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재해보상법의 범위와 이 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법에서 피해자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는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중복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도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주민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특조위에서 했던 소방관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은 희생자로 인정한다는 말씀이고 아까 공무원을 피해자로 인정할 거냐 이 부분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피해자에서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외하는 것을 삭제하는 의견이 나온 법안이고 저희는 그냥 공무원은 피해자에서는 일단 계속 제외해도 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공무원재해보상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 부분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이 공무원재해보상법과 이 법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유사하고 특별히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 관련해서도 소방이나 경찰들은 내부적으로 PTSD 관련해서 요양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실질적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보기에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법조문적으로는 우리 법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실제 현상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특조위 의견은 어때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저희의 판단력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박주민 위원** 필요할 것 같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예.

○**박주민 위원** 사실 별 차이가 없다면, 행안부…… 죄송합니다. 제가 행안위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입니다.

○**박주민 위원** 저를 욕해 주세요.

별 차이 없다면, 사실 별 차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포함시키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도……

○**박주민 위원** 일반적인 모든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성으로 인정될 만한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소방공무원 전체를 놓고 보면 다른 것에서 PTSD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또 소방재해보상법을 받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두텁게 보상을 해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이태원의 참사 때 한 사람과 세월호 참사 때 한 사람이 다르다면 그것은 법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을 전체를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소위원회장 강명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넘어갈까요?

○**전문위원 김세현** 바, 부칙 부분입니다.

부칙은 정춘생 의원안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고 이해식 의원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9월 16일 자로 종료 예정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고려하면 26년 9월 16일 이전에 법률의 공포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현재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은 다른 규정과 달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한 연장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부칙은 이해식 의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기간 연장만 합의가 된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박주민 위원 기간 연장은 이해식 의원안으로 하는 거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었어요.

○박정현 위원 예, 그것은……

○전문위원 김세현 다 이견들이 있으셔서……

○박정현 위원 다른 부분은?

○전문위원 김세현 예.

○박정현 위원 특별히 이견이 지금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세현 다 이견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무원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고, 활동기간 연장 ‘나’는 이견이 없으시고, ‘다’의 보상금 근거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교육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서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 합의되신 부분은 활동기간 연장만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일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확인한 부처에서의 어떤 쟁점도 있고, 사실 오늘 상정된 법안 말고도 소위 구성원인 제가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도 있고 권철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도 있고 이 법 외에도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보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배·보상 절차에 관한 신설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치유휴직 기간 연장이나 아니면 사실 이번에 기한이 연장되게 되면 조사는 점점 더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 텐데 징계시효, 공소시효 등이 끝나 가지고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중지까지 포함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한 연장에 한정해서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들께서 빠르게 이후에 후속적인 논의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소위원회 일정을 좀 잡아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는 약간 특정한 법안들뿐만 아니라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같이, 제 법안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해서 이태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숙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특조위 소관 법률심사는 이것으로 마치시고요. 관련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고요.

다음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유재성 차장, 직무대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입니다. 이 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총 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첫 번째 도로교통법 개정안 김성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 즉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반행위는 범칙행위로서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위반에 대해서 160조 제3항에 따른 고용주 등(차량관리자, 운전자의 고용주 등)—차량소유자 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160조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64조 위반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무인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해당 과태료

는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만 고속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체계와 해당 도로의 관리 그리고 무인단속장비의 설치·관리 주체 등을 고려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는 ‘시장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8페이지 봐 주시면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부칙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개월 시행 유예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생각했을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항으로 넘어갈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세현 다음, 도로교통법 서범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정안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인 5년 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위반한 사람’으로 개정해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해당 면허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행안위에서 개정한 법률이지만, 최근에 개정된 2024년도 개정 법률인데 현행법상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을 1차 위반을 하고 24년…… 아, 뒷부분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무면허·면허정지 등의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를 5년 내 재위반하는 경우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등 재위반자가 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등 재위

반자보다 빠른 시점에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를 보시면 면허 운전자가 5년 내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면 결격기간을—음주운전은 2년입니다—거치고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기간을 거칩니다. 결격기간과 동일합니다. 이 두 기간은 2년, 2년 4년을 거쳐야지 일반 면허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에는 5년 내 음주운전 등을 반복했는데 결격기간 2년을 거치고 바로 일반 면허를 받게 됩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 재위반자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문언에 있어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적용요건을 각 호로 분리해서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4페이지에 그 취지로 각 호를 구분했습니다. 1차 위반하고 5년 내에 2차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 1호에서는 면허 있는 자를 전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2호에서는 43조 또는 96조 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무면허 운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 호로 분리해서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칙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을 보시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례도 이 법 시행 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최초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2026년 10월 25일 이후로 예상은 됩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 면허가 있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과 함께 무면허 운전자도 같이 적용되도록 시행일과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칙 2조 또한 적용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효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만 개정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벌이나 행정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래의 운전방법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8페이지 봐 주십시오—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재위반자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포함시켜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로 봤을 때 공익상의 사유가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시행 전, 이견 전과 전력 포함입니다, 전과 전력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이 26년 10월 25일 이후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결격기간이 종료되어 일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문제로 위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칙 조문대비표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고 적용례 또한 그에 맞추어서 정리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의 재위반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시행일과 적용례를 수정하고 그리고 3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일반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해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부칙은 3개의 조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의견 없으시면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6년 3월 달에 한번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사, 경찰공무원,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른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운전에 장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가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본인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편입되기 위한 신고는 거부하지만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 등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운전자를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4일 소위 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당사자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

의사의 자발적 통보에 의존하는 것은 실효성 공백이 있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 기초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들이 운전면허 불이익을 우려해 오히려 치료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은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위험 환자를 통보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봐 주십시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개정안이 의료현장과 환자 진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치료 중단과 관리 공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단 등과 같은 기관이 아닌 경찰공무원,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개인의 판단만으로 공단이 바로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제도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공단이 아니라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우선 요청하고 경찰청장이 해당 요청 대상자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단에 개인정보 자료를 통보하게 하여 무분별한 검사 실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조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십시오.

1차 소위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고려하여 수시 적성검사 신청 대상에서 의사를 일단 제외했습니다.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신청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아니라 ‘요청’으로 용어도 수정했습니다. 조 제목도 거기에 따라 수정을 했고 다른 내용도 일괄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조문이 82조입니다. 82조는 운전면허 결격 관련 규정이고 89조 지금 수시 적성검사 관련 규정은 8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적성검사 해당 조문 88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문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장은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요청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

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3항은 같은 규정이고 신청을 요청으로 바꾸었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십시오.

비밀유지 의무를 일괄하여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1차 소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서 이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빠짐에 따라 형법과 의료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요청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무상 알게 된 요청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5항을 보시면 이에 따라서 위임 규정을 다 정비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88조(수시 적성검사), 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정비했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령 정비를 위해서 개정 규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식 위원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대행님, 이게 그러면 고령이나…… 부의장님이 그것 하신 거는 고령 이런 거지요? 고령 아니면……

○주호영 위원 하여튼 주위에서, 가족이 봤을 때 저 사람 운전하면 위험하다 그런 경우를……

○이상식 위원 봤을 때 운전하면 안 된다? 고령으로 인한 신체 노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고령이나 치매나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운전하면 안 되는데 하고 우려할 경우에 그걸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치매가 온다든지 가족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가 혹시……

○주호영 위원 통계가 1년에 대략 3만 6000명 정도인데 실제 1만 4000명만 검사를 받고 2만 2000명이 공백 상태……

○이상식 위원 저도 그거는 보기는 봤는데 실제로 큰 사고, 그러니까 접촉 사고 이런 것 말고 사망 사고 이런 것 나타난 비율은 좀 있습니까, 사망 사고 같은 것?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서영 고령자 사고 통계는 있는데요. 이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의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다른……

○이상식 위원 수정안 89조 2항, 이게 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경찰청장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 요청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할 수 있다입니까, 통보하여야 한다가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통보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김세현 예, 통보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 통보하여야 한다가 맞다?

○전문위원 김세현 왜냐하면 4페이지 보시면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규정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서도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이것도 맞추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맞았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재량을 두지 말고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는……

○전문위원 김세현 예, 그런데 경찰청장이 지금 현재는 바로 공단에 통보하는데 지금 경찰청장이 요청하면 경찰청장이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통보……

○이상식 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량이 아니고 계속으로 통보하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이상식 위원 체계상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김재홍 차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입니다.

오늘 심사 예정인 소방청 법률안에 대해서 국민 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윤건영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재 소방청은 민간 위원 3인 공무원인 위원 7인, 총 10명의 위원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이 중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소방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문은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체로 법문은 명확히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리고 부칙은 지금 현재 개정안이 25년 11월에 발의되어서 그 당시에는 시행 전 법률인 26년 4월 2일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6페이지 봐 주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에 맞추어서 협의체를 분명히 시·도지사 협의체로 하고 부칙은 26년 4월 2일부터가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12항, 13항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채현일 의원과 강명구 소위원장께서 발의하셨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직급과 임용권의 종류에 따라 임용권자를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면서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은 임용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관련해서 채용, 승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파면은 대통령이 임용권자이고 임용 제청은 소방청장이 하며 시도 소속일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자이며 시도 소속일 경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임용권 위임에 있어서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상당 부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시도 소속일 때입니다, 지역 간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도별로 승진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지휘관급 소방공무원, 소방정·소방준감 계급의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을 시도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위임했다라도 직접 임용권자가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4페이지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는 주체에 대해서 채현일 의원안은 대통령만, 강명구 소위원장 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보 관련해서 소방준감·소방정에 대한 전보 등에 대해서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다면 소방청장도 직접 임용 주체에 추가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행사하는 임용권의 종류에 대해서 채현일 의원안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임용권 직접 행사 방법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취지는 달성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 임용권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7페이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에게는 승진·전보 등 근무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임용권자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필요한 경우에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종류나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도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소방청에서 요청하고 있고 하위 법령 마련에 시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행 유예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12페이지에 조문대비표가 있고.

14페이지 보시면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3항이 대통령이고 4항이 소방청장의 임용권 규정입니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은 제3항 또는 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표현을 둔 것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위임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참고하여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각 호를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의원안은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한다라고 돼 있으나 법문을 명확히 하려면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소방준감 이상이라고 하고 있으나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정감, 소방총감의 승진임용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하기 위해서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으로 명시했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16페이지는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의 전보·파견을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의 전보 및 파견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호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입니다.

부칙은 최소한의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위임 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로 유예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심사할까요?

○전문위원 김세현 그러면 20페이지 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은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입법할 때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역량평가 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뿐만 아니라 과장 직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도 향후 역량평가 대상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역량평가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자를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방준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소방준감은 소방청 소속인지 시도 소속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계급으로서 동일한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통일적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서 시행 유예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의 부분과 달리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소방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행유예 기간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제가 정말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이런 역량평가 가……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역량평가제도? 이게 뭐를 평가한다는 건지 역량을, 지식을 평가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네, 정말로 저는.

○전문위원 김세현 역량평가제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06년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과장급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도입돼 있습니다. 저희 국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요? 이거 뭘 하는 거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위원 김세현 제가 역량평가받았던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장 승진하려면 역량평가를 하는데 그 시험을 만나질, 계속 시험을 친다……

○이상식 위원 시험을 칩니까? 필기시험을?

○전문위원 김세현 예, 저도 2018년에……

○이상식 위원 과목은?

○전문위원 김세현 과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3가지를 쳤습니다. 제가 2018년에 쳤는데 칠 때에는 처음에는 서류합기법이라고 해서 이 정도 되는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제가 한 것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합니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다라는 것을 1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30분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면접자 앞에 가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데 외부인이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면접에 답을 하고 첫 번째 시간은 그랬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있어서 언론 대응도 하게 되고 토론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외부 면접자가 면접을 하고 저희를 평가하고 떨어지고 여러 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거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예.

○이상식 위원 떨어지면 승진 못 합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예, 승진 못 합니다.

○이상식 위원 2006년도에 그게 실시됐다고요? 경찰이랑 소방, 소방은 지금 하려는 거고.

○전문위원 김세현 예, 그것은 일반공무원이 그랬고 저희는 그때 아니고……

○김영배 위원 시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통과 못 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세현 저희도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이 2006년부터 시작했고 나머지 착착착착……

○전문위원 김세현 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 직급에 시험이 사실상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우리는 행정고시 한 번 한 걸로 그냥 끝이었는데……

○소위원장 강명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항으로 넘어갈까요?

○전문위원 김세현 14항 소방공무원법 박정현 의원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은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법문을 일원화하고 교육대상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학교 용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대상자에 관계 법령에 의해 소방교육훈련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훈련기관 법문 표현에 관해서는 이를 일원화할 경우 법문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교육훈련 대상·내용에 따른 명칭 사용의 오히려 다양성과 확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교육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방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에서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소방교육·훈련이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민간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이외의 교육대상자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 20조 1항은 소방청장이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두 번째, 소방청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 명확화를 위해서는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법령상 교육·훈련 근거가 있는 대상과 그 외에도 소방 관련 교육훈련 수요가 있습니다, 민간에도. 그래서 소방청장이 설치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대상을 첫째 소방공무원 그리고 둘째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세 번째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시도 교육훈련기관도 소방청 교육훈련기관과 동일한 교육 수요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대상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마련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서 시행일 또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9페이지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나중에 보시고 나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의 나는 시도지사가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시 소방청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법 체계를 다시 현행법에 맞춘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에서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와 그 설치를 위한 사전 협의를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지는 이해되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서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1페이지에 조문대비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조문대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항으로 넘어갈까요?

○전문위원 김세현 15항, 진선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소방공무원법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을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고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소방사, 소방위,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소방위 계급에 대해서만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소방위공개 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시대상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행정고등고시도 지금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공무원도 경찰간부 후보생이 아니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었고 후보생은 합격자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비취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니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선발시험으로 돼 있어서 명칭을 용례에 따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시행일 유예는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그 사람은 선발자이기 때문에—보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조문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조문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세현 16항부터 18항까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의원, 정춘생 의원, 양부남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방식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다 다르십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인구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이고, 정춘생 의원안은 법률로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남 의원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70세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노령 인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점식 의원안은 인구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서 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은 감안할 수 있으나 연장 지역과 비연장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춘생 의원안처럼 법률에서 정년을 규정하게 되면 전국적 통일성 확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특수성 고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양부남 의원안처럼 조례로 정하게 되면 지역별 특수성은 감안할 수 있고 지역 여건 변화는 반영할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도 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 발생이 가능하고, 사실 이 또한 기준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소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25년 7월 9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조례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장기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도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초에 의견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소방청은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통일성이나 안정성 등을 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식 위원 저는 의용소방대에 정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같은 유사 조직에서는 정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소대 규정에만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지요? 정년이 있다는 말은 이분들의 신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데, 수당 같은 것을 준다고……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현재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활동에 따라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자체별로 조례로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노령 인구가 얼마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싶은데 그것보다는 정년은 정해야지…… 육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률로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주민 위원 말씀하신 수당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기본적으로 시도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의소대가 있는 시도입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시도가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범위는 법률로 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장시켜 주는 거니까.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소위원장 강명구 계속 심사할까요?

○옹혜인 위원 저는 양부남 의원님 안으로 5년 이내에서 시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김영배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옹혜인 위원 65세~70세가 5년인 건데 그 안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옹혜인 위원 지역마다 상황도 굉장히 다르고, 여기 전문위원님이 작성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정년 도래로 인한 의소대 이탈 규모가 7151명인데 그중에 경남·전남·전북·경북 다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주민 위원 양부남 의원님 안으로?

○박정현 위원 그러시지요.

○박주민 위원 기뻐하시겠네요.

○소위원장 강명구 계속 심사할까요?

○이상식 위원 소방청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소방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기본적으로는 최대 맥스인 70세 정도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법률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노령화 때문에 의소대가 감소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중에 경상남도가 특히나 심한데요. 규모도 있는데 의소대 감소비율이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법으로 해 줬으면 우리가 의소대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음을 밝힙니다.

○이상식 위원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옹혜인 위원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의 차이가?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것과 조례로 열어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김영배 위원 같은 이야기지. 법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5년 인상하면 법으로 하는 거

니까……

○이상식 위원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옹혜인 위원 이것도 법으로 해 주는 거긴 한데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를 들면 지방의 소방과 관련된 정책비용에 교부금도 일부 들어가고 국비도 일부 들어가는데 지역마다 다르면 어느 시도는 또 왜 이만큼 주고 덜 주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기타 등등.

그래서 통일성이 일단은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입장을 저희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치단체장이 하라 그러면, 70세로 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왜 70세로 하나, 68세로 하지’ 그런 주장을 하고 다툼이 있을까 봐 그런다 그 소리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럴 수 있습니다. 조례 또는 하부 법령보다는 법령이……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으면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해 주라 그 말이거든.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율적으로 열어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부남 의원안으로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소방공무원법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정춘생 의원, 임미애 의원, 박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재분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산불진압 및 산불예방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활동은 소방대 본연의 업무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시행하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외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활동이 소방지원활동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전활동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를 위한 활동입니다.

개정안들은 소방대가 산불진압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된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거나 관계지역의 정의 중 산불이

화재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예방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는 안도 있고, 응급의료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들에 있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활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진압 업무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 차원에서 소방대가 수행하는 활동이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소방대 본연의 업무인 소방활동으로 분류될 경우 소방대가 다른 화재현장과 마찬가지로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산불진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진압을 위한 예산 확보도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 대응체계에 대해서 다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의 통합지휘권자는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장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이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 적극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봐 주십시오.

관계지역의 정의 중에 산불이 화재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같습니다. 소방청에서 산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지역의 정의 규정 중에 산불이 화재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법체계에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산불예방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산불예방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게 되면 일반적인 화재예방 업무로서 산불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입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활동은 응급의료 활동에 달린 활동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구급활동을 소방활동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급활동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앞에 보면 소방대가 수행하는 구급활동은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등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미 현행법에서 구급활동을 소방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지원활동을 구급활동과 구분해서 소방지원활동에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소방활동에 소방대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구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는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 말씀드리면 시행일은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은 6개월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재난방지법을 보면, 7페이지 봐 주십시오.

36조(협조) 규정을 보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산불진화 관련한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호 보시면 ‘소방관서’ 하고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에 산불진압이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소방활동으로 변경되면 소방관서로 규정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 차원에서 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시면 각주에 36조(협조) 규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소방관서의 경우에만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돼 있고 다른 경찰관서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주민 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된 법하고 동시에 개정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김세현 그래서 다른 법률 개정으로 부칙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데 이게 저희 법이 아니어서, 그래서 보시면 14페이지에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해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박주민 위원 타법 개정, 부칙을 넣게 된다?

○전문위원 김세현 예, 지금 타법 개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해서 산림재난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서 ‘소방관서’로 괄호를 빼면 됩니다. 다른 기관들은, 경찰관서, 군부대 모두 괄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방관서’로 이렇게 타법을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렇게 타법을 개정시켜 버리면……

○옹혜인 위원 본회의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율이 되겠지요.

○박주민 위원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부칙에 타법 개정 내용을 그냥 넣어버려서?

○전문위원 김세현 예, 다른 법률의 개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문 정리 차원에서는 하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산불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했기 때문에 괄호가 있었는데 소방활동이 되기 때문에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활동에 관계 없이 산불진화와 관련된 거는 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문 정리 차원이라고 보아서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타법 개정 한계 내에서 해야 됩니다, 타법 개정은

○박주민 위원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원래 지휘하고 주도권을 갖게 돼 있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바뀌어도 지휘체계나 이거의 변화는 없나?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전혀 변동 없고 산불의 주관부처, 주무부처는 산림청이고. 다만 진압 과정에서 소방이 보조적으로 해 왔던 것을 소방조차도 열심히 같이 끄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산림청이나 이쪽 의견을 들어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산림청도 의견을 냈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소방헬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이렇게 되면 지휘체계가 변경은 없겠지만 불이 날 경우에 운용은 원래 산림청이 통합해서 지휘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통합지휘권은 산불현장에서는 당연히,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개별적인 운항과 관련해서는 개별, 분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활동으로서, 우리가 지정하고 헬기를 띄우고 활동하는 게 보조활동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만 돼 있는데 권한 밖에 하던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영배 위원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소방차 같은 경우도 전국으로 동원하라고 할 때, 지난번에도 한 군데 있을 때 전국에 있는 소방차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의사결정은 소방청장이 할 거 아니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산림청에서 지휘가 늦더라도 이게 소방활동이니까 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소방청장이라도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일종의 약간, 직접적으로는 소방활동이 되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당연합니다.

○김영배 위원 불 끄는 임무를 산림청에서 잘 못 해도 예를 들어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냥 지원만 하던 입장에서 불을 꺼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면 이게 직무유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말씀하신 그대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맞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조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권한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법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까지는 산림청이 산불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소방도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저번에 채 해병 사건 때 그 해병대가 육군 관할지역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휘하부대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 경우에도 지휘체계, 법률로는 그걸 상세하게 다 규

정할 수 없는데 지휘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위원 김세현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산림청에도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 8페이지 봐 주십시오.

8페이지에 다 동의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김예지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등 소방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청은 건물 구조,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 정보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 사전에 등록하고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을 현장 출동대원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소방대원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 출동 후 건물 관계인 등과 면담하고 현장 육안 확인 등을 통해 내부 구조 및 위험물 적재 위치를 보완적으로 파악하여 화재 등의 진압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좌측 아랫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큰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전자적 방법으로—4페이지입니다—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및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인 스마트 도면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QR 코드 등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즉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 위험물 적재 위치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화재진압과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재 현장에서 스마트 도면함을 활용한 데에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도면함 활용 과정에서 초기 화재진압 착수가 지연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 현장 도착 후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방대원이 현장 도착 직후 스마트 도면함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와 같이 화재 출동 시에 119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출동대원에게 소방활동 정보를 전송해 주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화재진압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제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면함을 소방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증 또는 표준 등 제도적 기반을 선행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인증, 우수품질인증 및 KFI 인증 등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방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용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스마트 도면함은 단순한 정보제공 장치가 아닙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정확성, 작동 안정성, 통신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현장 접근성 등 소방현장에 특화된 성능 기준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도면함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방용품 품질인증제도에 준하는 인증 또는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도면함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입법되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스마트 도면함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계인의 수용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발의해 주신 김예지 의원님의 소방안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주민 위원 김예지 위원님 계셨어야 되는데……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나 취지는 좋은데 실제 여러 가지 조건들

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추가 보완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혜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소위는 정회했다가 본회의 끝나고 한다는데 우리는 말은 바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도 우리 정회했다가 자동산회로 그냥 할까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강명구** 이것으로 오늘 제2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청 차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명구 김영배 김예지 박정현 박주민 용혜인 윤건영 이상식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재난관리정책국장 황범순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직무대리 한건수

경찰청

차장 유재성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서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민욱

소방청

차장직무대리 김재홍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인사담당관 정광복

보건안전담당관 김재운

교육훈련담당관 유병욱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

임시회의록